

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5. 26.

원 주 시 장

1. 공고대상

| 대상자 | 차량번호 | 대상자 주소 | 위반사항 | 위반장소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박*선 | 15두****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77, *동 *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36-1 부영아파트 |
| 박*성 | 197러**** |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95, ***동 *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461 호반베르디움 2차 |
| 송*름 | 140노**** | 강원도 원주시 봉화서부로 11, ***동 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84 원주 봉화산 푸르지오 |
| 최*관 | 21나**** | 강원도 원주시 봉화서부로 11, ***동 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84 원주 봉화산 푸르지오 |
| 오*석 | 45나**** |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70, ***동 ****호 | 충전방해행위 |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34(롯데캐슬 더퍼스트 2차) |
| 이*진 | 150저**** |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19, ***동 *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15-1 무실6단지 휴먼시아 |
| 김*숙 | 137머**** |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23, ***동 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425 신일유토빌아파트 |
| 김*주 | 57마**** |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 86, ***동 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18 한라비발디 |

| | | |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조*자 | 67마**** |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49, ***동 *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470-1 반도 유보라 2차 |
| 이*운 | 28서**** | 강원도 원주시 이화6길 39 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461 호반베르디움 2차 |
| 김*미 | 252마**** | 강원도 원주시 반곡길 48, ***동 ****호 |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|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964-3 원주혁신도시 8단지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|

2. 공고기간: 2023. 5. 26.(금) ~ 2023. 6. 9.(금)

3. 공고내용

가.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진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, 공고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만약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하오니,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원주시 기후에너지과(033-737-3046)로 연락 바랍니다.

라. 추가감면대상자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합니다.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2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-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
- 5) 미성년자

마. 납부방법: 재발부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시중은행에 납부

4. 문의처 :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(☎033-737-3046)